

메디다스-매드맵, 저작권 분쟁

국내 대표적인 전자차트 개발업체인 메디다스(대표 김진태)와 부산지역 유력 전자차트 개발업체인 매드맵(대표 이동현)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메디다스는 매드맵이 자사의 전자차트인 '의사랑'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에 '프로그램의 생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4일에는 서울지방법 검찰청에 컴퓨터 프로그램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메디다스는 "지난해 10월경 매드맵의 전자차트인 '매직차트'를 입수·분석한 결과, 이 제품의 화면구성과 데이터베이스(DB) 구조 등이 '의사랑'을 무단 도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매드맵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18일 매드맵에 이에 대한 답변 및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메디다스 관계자는 "메디다스가 지난 10년간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얻은 결과가 무단 도용될 때 그 피해는 결국 고객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고객의 이익과 메디다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드맵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 출시된 전자차트가 현행 의료보험법이 규정한 양식에 준해 개발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화면구성이나 DB구조의 유사성은 피할 수 없다"며 "화면구성이 '의사랑'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매직차트'는 화면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매드맵은 또 "이번 사안의 핵심은 '매직차트'와 '의사랑'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무단도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법률자문을 통해 소스코드가 다를 경우 화면구성 등이 동일해도 '우연'으로 처리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메디다스 측의 도용주장을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해 무단도용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며, 메디다스의 법적대응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FIFA 월드컵 상표권 분쟁 치열

월드컵 엠블럼과 로고 등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일본 기업들과 FIFA의 법률공방이 치열하다.

아사히신문은 FIFA가 지난해 중순부터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일본 내의 FIFA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4백건 이상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FIFA는 월드컵 엠블럼과 마스코트, 트로피, 로고 등 대회 관련 표식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2백여건에 달했다.

FIFA는 공식스폰서(official partner)와 공식 공급업체(local supplier)를 제외한 기업들이 월드컵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행사를 벌일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제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월드컵이라는 상표를 일찌감치 일본 특허청에 등록한 업체들이다.

와카야마현(縣)의 한 주조회사는 30년 전 컵이 든 청주를 월드컵으로 상호등록한 뒤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해 왔다.

오사카의 한 양복회사 역시 40년 전부터 월드컵이라는 이름의 스웨터를 만들어 왔다.

FIFA는 99년 두 업체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 특허청은 “월드컵이 일본에서 유명해진 것은 94년 이후로, 업체들의 상표출원에 부정확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FIFA는 “축구대회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만큼 대회상표 권리는 FIFA만이 가질 수 있다”며 심의 결과에 불복,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한 상태다.

출처 중앙일보

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라이선스 없이 테트리스를 이용하는 영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테트리스를 이용해 유무선 게임 서비스나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NHN·위즈게이트·넷마블 등 이 게임을 이용해 대규모 게임 포털 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은 서비스 중단이나 라이선스 계약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유의 이경훈 변호사는 “테트리스가 그 동안 저작권 확보없이 불법적으로 이용돼 왔으나, 국내 상황과 업계 실정에 맞춰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의 이익 분배가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테트리스 국내 저작권 새국면

지난 1년 동안 지속돼 왔던 “테트리스” 게임의 저작권 문제가 국내 독점 대리인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무법인 대유의 한 관계자는 “미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테트리스 게임 저작권자인 테트리스 컴퍼니(The Tetris Company)와 한국내 저작권 업무와 관련해 독점 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유는 “테트리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업체들과 미 업체를 연결시켜 양자간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우선 테트리스게임을 이용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

서울지법 판결 “문화상품권” 명칭 독점못해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은 일반명사로 고유한 상표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문화상품권”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발행사인 (주)해피머니 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상품권”은 상품권의 용도가 문화 분야라는 점을 설명하는 명칭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법으로 보호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는 독점적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3~12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상품권 100만장 시가 50억원어치를 발행,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문화일보

삼성전자, D램 특허 침해로 피소

삼성전자가 D램 특허기술 침해의 이유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피소됐다.

일본 마쓰시타전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법인 삼성일렉트로닉스·삼성세미컨덕터·삼성오스틴세미컨덕터 등 3개사가 3건의 D램 특허기술을 침해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3억달러 규모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쓰시타측은 삼성전자가 3개 미국법인이 D램 특허기술을 침해해 건당 1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삼성이 생산한 D램의 판매금지 명령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간 삼성측과 벌인 협상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이번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마쓰시타가 제소한 3건의 특허는 D램 회로와 관련된 기술로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해당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유효한 특허권은 존중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기술을 가지고 위협하는 특허권자에는 강력하게 법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소송에서 마쓰시타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 할 것이고 고객들에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계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특허침해소송 효성 미하니웬사에 승소

효성이 2년여를 끌었던 미국 하니웬사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9년 11월 하니웬이 효성을 상대로 낸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청구기가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효성과 하니웬의 고강력사 제조 원천 기술에는 차이가 있으며, 효성의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이 하니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폴리에스테르 고강력사는 강도가 높고 고열에도 변형되지 않는 특수 합성섬유로 자동차 타이어·공업용 벨트·호스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효성은 세계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향후 국내·외 생산 및 수출에서 보다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주피터·넷레이팅스 특허침해 논쟁 가열

미 인터넷시장조사 업계에 “합방(合房)을 앞둔 기(氣)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주피터미디어

메트릭스가 지난해 10월 합병기로 한 넷레이팅스에 대해 특허침해 사실을 제삼 강조하고 나선 것.

주피터는 넷레이팅스의 온라인 측정방법이 자신들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제기한 소송을 다시 강화할 뜻을 밝혔다. 합병할 경우 각종 대립을 중지하는 업계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주피터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넷레이팅스도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재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송에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1, 2위인 두 회사는 지난해 온라인 트래픽 측정용 단일표준을 개발키 위해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외형적으로는 넷레이팅스가 7120만달러를 들여 경쟁업체 주피터 미디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 거래를 놓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로 바쁜 두 회사가 특허문제로 침해하게 대립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에 따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합병과정에서 소외된 주피터 측의 실지회복을 위한 공세로 풀이된다. 합병 이후에도 넷레이팅스의 빌 펄버 사장이 새 회사의 사장 겸 최고 운영책임자(COO)로 선임되는 등 넷레이팅스의 입김이 강화되자 주피터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넷레이팅스가 합병연기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피터 측도 합병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완강하게 맞서고 있다. 주도권을 둘러싼 살바싸움이 감정싸움으로 와전,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시장이 워낙 어려운

데다 두 회사간 협력으로 인터넷 트래픽 측정시장에서 얻을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피터의 전력을 들어 이번 강공이 단지 제스처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지난 2000년 주피터가 경쟁업체인 PC데이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PC데이터를 업계에서 축출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출처 전자신문

인터넷업계, 특허권 법정공방으로 시끌

최근 인터넷업계가 특허권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비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속속 등장해 각 부분에서 법정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교육콘텐츠 제공업체 (주)열린교육(대표 전형선)은 지난 12월말 휴대전화를 통한 게임 다운로드에 대한 특허권 취득을 근거로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와컴투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 2개에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열린교육이 주장하는 특허권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로 게임콘텐츠를 다운로드받는 서비스 방식이다.

따라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들은서비스를 중지하든지 특허료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열린교육의 이복영 부사장은 “지난 99년 1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장치 및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지난해 7월 특허를 취득했다”며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특허출원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이 새로운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특허청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며 콘텐츠 제공업체들 역시 ‘특허등록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에 대한 특허권 분쟁도 뜨겁다.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한 요금을 휴대전화로 내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권자인 (주)인포허브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날과 모빌리안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포허브가 보유한 특허권은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이용한 요금을 낼 때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이동통신사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콘텐츠 이용료가 포함돼 청구되는 서비스 모델이다.

다날은 ‘인포허브의 특허권 행사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논쟁도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는 프리첼이 지난달 15일 시작한 ‘마이홈피’ 서비스가 자신들의 ‘미니홈피’ 서비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률 소송을 검토중이다.

프리첼의 마이홈피 서비스는 회원들이 자신의 소개를 담은 간단한 개인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이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하는 서비스다.

싸이월드는 마이홈피 서비스의 유료모델과 디자인, 사업기획이 이 회사가 지난해 9월 시작한 미니홈피를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첼 관계자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서비스를 기획단계에서 벤치마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은 아니다”라며 “싸이월

드가 기존의 여러 서비스모델을 조합한 서비스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싸이월드의 이동형 사장은 “프리첼의 서비스는 일반인이 봐도 싸이월드를 모방한 것”이라며 “5개월에 걸쳐 개발한 미니홈피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법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누에그라’ 상표 사용 시킬 ... 식약 안전청, 업계 심경전

‘누에그라’ 상표 사용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업계간 신경전이 뜨겁다. 식약청은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누에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연상시킨다”며 ‘누에그라’와 ‘원잠누에그라’를 쓰지 않도록 생산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주양잠협동조합(조합장 윤장근)은 특허청에 출원한 ‘원잠누에그라’ 대신 ‘원잠누에’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근화제약은 행정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에그라란 상표를 그대로 사용, 판매하고 있다.

근화제약측은 “식약청이 누에그라를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해줬다가 뒤늦게 상표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화제약은 지난해 6월 누에그라란 상표를 내고 9월 5일 시판에 들어갔었다.

업계는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에서 사전에 광고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누에그라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하기가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력증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업계측 주장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등의 공식 연구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그라’도 나이가가라폭포에서 따온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이유로 정부가 농가소득을 늘리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누에그라 사업에 굳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출처 한국경제

저작권에 무를 뚫었던 냅스터 1년만에 다시 떠

냅스터(<http://www.napster.com>)의 손 패닝이 재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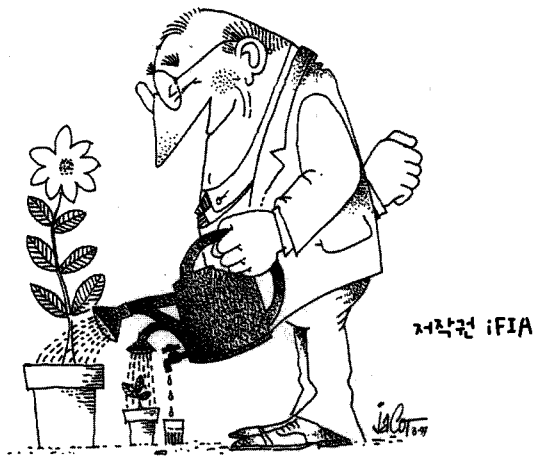
그는 인터넷 세상에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아이디어라는 P2P(파일공유서비스)를 이용해 공짜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냅스터를 만든 주인공. 잘 나가던 그는 약 1년 전 음반저작권에 무를 뚫고 냅스터를 폐쇄해야만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0일 냅스터를 다시 열었다. 5대 메이저 음반사가 아닌 독립음반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0만여곡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단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시험기간 중에는 기존 회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2만명을 골라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4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월 사용료 5~10달러에 50분 정도 다운로드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만간 5대 메이저 음반사와의 협상도 마무리 지어 저작권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메이저 음반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지난달 잇따라 문을 열었다. 타임워너·EMI·베르텔스만은 뮤직넷을, 비방디 유니버설과 소니뮤직은 프레스플레이를 출범시켰다.

패닝은 그래도 냅스터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뮤직넷 등과는 달리 여전히 P2P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MP3파일 형태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짜에 길들여져 있는 네티즌들이 과연 선뜻 돈을 낼지 미지수다.

출처 중앙일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
2, 2000헌기4(병합) [합헌]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
원].... [판례집 12-1, 508~543]

[판시 사항]

1.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 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와 비교하여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1.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라고 보여진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

하여 법무사, 변리사 및 손해사정인 등 법률 사무관련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입법자가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변호사와 비교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법률사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규정은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이고,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보험업법 제204의4는 1995. 1. 5. 법률 제1865호로 개정·신설된 것으로서, 두 규정의 내용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상호 모순·저촉되므로 해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법률규정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 지를 가릴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보험업법의 규정이 이 사건 법률규정보다 뒤에 개정·신설된 점에 비추어 그 효력면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후법우선의 원칙)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인 “일반의 법률사건”에는 손해사정업무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의 해석재량으로 유죄판단을 할 여지가 남아있고, 이러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이 규정은 이 법위 안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손해사정인의 직업선택·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당사자】

청 구 인 1. 송용경(98헌바95)

2. 배순탁(98헌바96)

3. 조병래(99헌바2)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4. 황우필(2000헌바4)

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김응문

당해사건 1. 대구지방법원 98노2822 변호사법 위반(98헌바95)

2. 대구지방법원 98노2819 변호사법 위반(98헌바96)

3. 대구지방법원 98노2818 변호사법 위반(99헌바2)

4. 대법원 99도771 변호사법 위반(2000헌바4)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략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생략



【참조 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손해사정)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의4(손해사정인 등의 업무) 손해사정인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조 판례】

1. 대법원1994.5.10.선고 94도563,공보1994, 1748
2. 헌재 1996.8.29.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7.4.24.95헌마273, 판례집 9-1, 487, 496
헌재 1996.4.25.94헌마129등, 판례집 8-1,449,460
헌재 1997.4.24. 95헌마273, 판례집 9-1,487,494

【주 문】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

된 것) 제90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8헌바95 사건

청구인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0의 12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손해사정인으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1996. 9. 중순 일자불상 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1996. 9.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있는 청구의 정한수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하여주고 그 대가로 손해배상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해당 보험회사인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 및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직원과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하여 절충한 다음 1995. 5. 2.경 청구의 정한수가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28,265,800원을 지급받고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 1,8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1998. 5. 9.경까지 33회에 걸쳐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48,410,000원을 받음으로써 각 금원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98. 8. 25. 청구인에게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98노2822)하는 한편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98초2336)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11. 30.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98헌바96 사건

청구인은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의 7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손해사정인으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1996. 10. 일지불상 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3. 26.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청구의 강인춘의 아버지 청구의 강성용과 위 강인춘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하여주고 그 대가로 손해배상합의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후, 해당보험회사인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 및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직원과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하여 절충한 다음, 1997. 1. 20.경 강인춘이 손해배상합의금으로 금 6,245,100원을 지급받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 440,000원을 교부 받는 등 1998. 4. 10.경까지 28회에 걸쳐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5,370,000원을 받음으로써 각 금원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1998.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해 8. 25. 위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여(98노2819) 그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7. 위헌심판제청신청(98초2337)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99헌바2 사건

청구인은 포항시 남구 해도1동 33의 12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손해사정인으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1996. 6. 일지불상 경 포항성모병원에서 1995. 5. 2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유인섭과 동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손해배상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직원과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하여 절충한 다음 1996. 7. 23.경 유인섭이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8,038,160원을 지급받고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1998. 6. 16.까지 13회에 걸쳐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금 9,050,000원을 받음으로써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998.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25. 청구인에게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0원 및 추징금 9,05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98노2818호)하는 한편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98초233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2000헌바4 사건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신문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악구 신림본동 92의 360 소재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신문의 대표이사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1993. 12. 31.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500의 1 소재 우성베스트피아아파트에서 아파트 입

주자 대표회의 의장인 청구의 최상경으로부터 위 아파트 시공상 여러 하자가 있으므로 아파트 시공회사인 우성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착수금으로 금 13,065,600원을 지급받고 별도의 수수료조로 시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총액의 10%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하자검증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1994. 1. 13.경과 같은 해 2. 8.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를 위하여 약 33억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하자별손해내역서를 작성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김열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하여 시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뒤, 위 사건 소송과정에서 시공회사를 형사고발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원고측이 제출한 사실조회서, 준비서면 등을 미리 작성하여 원고측 변호사 김열에게 전달하며 재판부의 현장검증시 하자내역을 설명하여 준 후, 1995. 3. 21.경과 같은 해 4. 11.경 위 아파트관리신문사에서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승소금 총액의 10% 중의 일부로 금 3,000만원을 가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착수금으로 금 334,072,050원, 추가 수수료로 금 479,290,000원을 지급받아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사무를 취급하고 소송을 대리하고,

(나) 1994. 1. 4.경 인천 북구 계산3동 57의 2 소재 인정프린스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인 청구의 윤태검으로부터 위 아파트 시공상 여러 하자가 있어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계속된 보수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보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파트 시공회사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하자 및 그 하자를 보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금액을 하자검증보고서 등의 형태로 산출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 후,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이는 변호사가 없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줄 것이며 하자감정을 끝마치고 난 뒤라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향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각종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겠다고 답변한 뒤 그 대가로 입주민들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총액의 10%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하자검증업무계약을 체결하고, 1994. 1. 10.경과 같은 해 2. 28.경 2차례에 걸쳐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후, 1994. 2.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를 위하여 약 17억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하자검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착수금으로 금 346,538,000원, 추가 수수료로 금 32,000,000원을 지급받아 일반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법률관계문서인 하자검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각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96고단8312)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96. 11. 7. 위 공소사실 중 '나' 항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 '가' 항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8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96노8575)하였고, 위 법원이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99도771)하는 한편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99초471)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략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익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생략

(관련법조항)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

무로 한다.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손해사정)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의4(손해사정인 등의 업무) 손해사정인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법 제9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그 의미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워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명확성, 예측가능성의 원칙에 반한다.

(2)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제한하려는 목적과 제한하는 방법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이 정당

화된다 할 것인데, 위 법률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전반적으로 금지하여 일반 국민의 모든 법률수요를 변호사에게만 독점시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과 제한 방법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일반의 법률사무” 일체를 그 업무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음에 반하여 기타의 직업관련법규(보험업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서는 손해사정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가능한 업무영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호사와 비교하여 다른 기타의 직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법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제도를 지지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구성요건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는 그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고 어떤 범위 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법률규정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명확성, 예측가능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법률이 일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 영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격자에게 어떤

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그리고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사법이 변호사로 하여금 일반의 법률사건 일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다른 직업관련법규에서 그 전문분야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가능한 업무영역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변호사제도를 비롯한 위와 같은 각 전문분야에 관하여 그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법률에서 각 전문분야 고유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와 비교하여 다른 전문분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1) (가) 변호사제도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제도 등(헌법 제12조 제4항, 제5항 등) 헌법에 그 근거를 둔 헌법상의 제도로써 변호사

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따라서 변호사는 그 지위나 업무에 있어서 다른 전문직 종사자나 기타 사업자 등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그러한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우리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원칙으로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범죄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내용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